



제 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육시설 설치비용 우선 보조 〉
■ 광규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295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육시설 설치비용 우선 보조	2
※ 참고자료	6
□ 인구감소지역 개요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광규택의원 등 15인
2. 발 의 일: 2026. 7. 30.
3. 회 부 일: 2026. 7.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시설 기준에 맞는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건강을 추구하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인구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체육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이나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육시설 설치비용 우선 보조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체육시설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5조(보조) ① ----- ----- ----- -----,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현행법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기반시설로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

그런데 체육시설은 초기 설치에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규모가 작고 재정여건이 취약하여 주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충분히 확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체육시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

2. 체육시설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각종 체육시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補修)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설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 인구유출 완화 및 지역간 체육복지 격차 완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²⁾에 국가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 ②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우선 지급 여부는 인구 규모, 재정자립도, 체육시설 수요 대비 설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체육시설은 지역의 인구 수, 체육시설 인프라 공급정도, 활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충을 지원하여야 하나,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원을 강제하는 것은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②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인구감소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을 일정 부분 우선 배정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3조(국가지원의 원칙) 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및 연계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사업 공모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 위기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입장임.

충청남도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거나 공공체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우선순위, 예산 배분 기준, 지원 규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77

※ 참고자료

□ 인구감소지역 개요

- **인구감소지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규정된 지역으로, **전체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를 통해 지정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위 치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함천군	